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에 관한 연구

김사길[†] · 변승남

경희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 공학부

A Study on Expert Testimony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Sa Kil Kim · Seong Nam Byun

Department of Mechanical and Industrial System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Yongin, 449-70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guidelines for expert witness in product liability lawsuits. The expert testimony is one of the powerful methods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proof in product liability litigations. However, it has been seldomly accepted as a reliable evidence by trial judges because the expert's testimony has sometimes turned out to be illogical and unreliable. In order for the expert testimony to be admissible in the court, the expert should have a thorough understanding of his/her role as an expert witness and follow scientific methodology whose soundness has been generally accepted by both industries and academy.

Keywords: expert witness, expert testimony, product liability

1. 연구배경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에 대한 최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는 Frye v. United States 소송(Frye v. United States, 293 F. 1023, D. C. Cir., 1923)이다. 전문가 증언을 한 범죄수사 전문가는 용의자의 심문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했다. 그는 전문가 증언에서 이를 위증 자료로 제출했으나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그의 입증 방법은 학계나 산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일반적인 수용성; general acceptance)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각종 민·형사 소송에서는 Frye 소송을 ‘일반적인 수용성이 결여된 전문가 증언은 인정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례로 인용하고 있다.

전문가 증언에 관한 한, 제조물책임소송 또한 예외가 아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물 결함의 입증 및 결함과 피해와의 인과관계 입증 문제는 원고(plaintiff)나 피고(dependent) 측

변호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과거 과실책임하에서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의무가 원고측에 부가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원고측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결함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조물이 더욱 복잡해지고 기술 집약적으로 변하고 있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결함 입증에 대한 해당분야의 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함의 입증에 있어 원고나 피고측 변호인은 어떤 방법으로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결함의 판단 기준은 소비자 기대기준이나 위험효용, 표준일탈기준 등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난해하고 전문적이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결함 입증을 의뢰하게 된다. 이때 전문가의 입증 결과가 법정에서 효력을 갖기 위해 변호인은 전문가의 의뢰에 대해 재판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전문가 증언은 증언의 사실 여부에 따라 소송에서 결

[†] 연락처자: 김사길,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1리 경희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Fax : 031-203-4004,
e-mail : sagall@hammail.net

2002년 5월 접수, 1회 수정 후 2002년 5월 게재 확정.

정적인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Daubert 소송(*Daubert v. Merrell Dow Pharmaceuticals*, 509 U.S. 579, 1993)은 제조물책임소송에 있어 전문가 증언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Daubert* 소송은 전문가 증언이 피고측의 주장 을 입증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로 인정된 사례로, 이후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판례로 인 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Daubert* 소송에 대해서는 3.1 절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소송의 대상인 제조물이 기술 발달에 따라 다양해지고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어 결합의 입증이나 결합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 위 해서는 전문가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나라별로 제조물책임법을 법과 규정으로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적 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Product Safety & Liability Reporter*, BNA, 2001). 우리나라 역시 예 외가 아닌데, 무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의 제조물책임 법리하에서 결합의 입증을 위한 전문가 증언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법정에서 전문가 증 언이 채택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나 효과적인 전문가증언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 하게 될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전문가 증 언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증언(expert witness)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전문가 증 언에 대한 준비 지침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결합 입증과 전문가 증언

2.1 입증 책임

소송에서 사실(fact)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불리한 법 를 판정을 받도록 미리 정해 놓은 당사자 일방의 위험(danger) 또는 불이익(nonprofit)이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입증 책임(burden of proof)이라 한다(안상형, 1999). 이때 불이익을 받는 당 사자는 그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을 진다. 즉, 사실 관계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려 야 하는데, 이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입증 책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조물책임소송의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 법에서 불법행위법상의 입증 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원고는 손해의 발생, 결합의 존재 그리고 피해와 결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제 조물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소비자기대기준, 위험효용기준, 표준일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밖의 특수한 경우에 대 해서는 전문가의 조사(investigation)나 시험(testing), 실험(experimentation) 등을 통해 결합을 입증한다. 또한 결합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결합 제조물의 설계과정에서부터 마지막 공정까지 이해해야만 가능하고, 해당 제조물로 인해 발

생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결국, 전문가 증언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는 결합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조물의 결합 여부에 대한 판정 및 해당 피해의 원인이 해당 제조물의 결합 때문임을 밝혀야 한다.

2.2 전문가 증언이 제조물책임소송에 미치는 영향

전술한 바와 같이 *Daubert*의 제조물책임소송은 피고측 전문 가의 증언을 수용하였다. 결국, 피고의 제조물과 원고의 피해 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제조물책임소송 에서 전문가 증언이 최초로 채택된 소송이며, 소송 과정에서 수립된 *Daubert* 원리(*Daubert principles*)는 증거에 관한 연방법 403조(Federal Rule of Evidence 403)에 반영되었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전문가의 증언은 해당 제조물의 결합 입증을 비롯해 결합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문가의 입증 방법론(methodology)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의 증언이 인정되는 대부분의 소송에서 전문가의 증언은 재판의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소송 에서 전문가 증언을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재판관의 전문가 증언 채택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호타이어사와 *Carmichael*의 소송은 전문가 증언이 판결의 결정적인 기준으로 제시된 최근의 판례이다(*Kumho Tire Co. v. Carmichael*, 119 S. Ct. 1167, 1999). 이 소송에서 타이어의 결합과 사고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던 원고측 전문가의 증언은 채택되 지 못했다. 전문가의 입증 방법론이 *Daubert* 원리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판결 요지였다.

3. 전문가증언과 관련된 소송사례

본 연구는 제조물책임소송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대표적인 판례라 할 수 있는 *Daubert*, *Joiner* 그리고 *Kumho Tire* 소송 사례를 통해 제조물책임소송에서의 전문가 증언역할을 분석하였다.

3.1 *Daubert* 소송 사례

- 소송 개요;

*Mrs. Daubert*는 임신 중에 *Merrill-Dow Pharmaceuticals* 제약회사가 만든 ‘벤데틴’이라는 메스꺼움을 경감시켜주는 약을 복 용하였다. 이후 *Jason Daubert*와 *Eric Schuller*는 두 명의 기형아를 낳았다. 1993년 3월 *Daubert*는 기형아의 출산이 벤데틴의 복용 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Merrill-Dow Pharmaceuticals*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소송 당시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벤텍틴과 기형아 출산과는 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제약회사측은 원고가 주장하는 벤텍틴과 기형 출산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Doctor Steven H. Lamm의 전문가 증언을 이용하였다. Lamm은 벤텍틴의 인체 유해성 및 임산부의 영향 등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벤텍틴의 복용은 기형아의 출산과 하등의 관계가 없음을 증명하였다. 반면, Daubert는 해당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 8명을 통해 동물 실험을 하는 등 벤텍틴과 기형출산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한 전문가 증언을 준비했다. 그러나 Daubert측 전문가 증언은 일반적인 수용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Daubert측 전문가는 그 분야에서 잘 알려진 검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입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국 Lamm의 증언이 재판에서 채택되어 Daubert는 패소했다.

▪ Daubert 소송과 전문가 증언;

Daubert 소송 결과 전문가 증언은 과학적인 것이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정립되었으며 증거에 대한 연방법 403조에 반영되었다. 또한 Daubert 소송 결과, 판사가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과 적합성을 감시하는 게이트 키퍼(gate keeper)의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판사가 독립적으로 전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증거에 관한 연방법 706조(Federal Rules of Evidences 706)가 권고되었다.

3.2 Joiner 소송 사례

▪ 소송 개요;

Robert Joiner는 General Electric Company의 직원이었다. 1983년 GE사는 변압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고 변압기 용기를 수리하였다. 그러나 냉각제에는 다양한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PCBs의 노출에 따른 위험성이 제기되었다. Robert Joiner는 전기 기술자로서 문제의 변압기를 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작업중 실수로 Joiner는 변압기 냉각제를 뒤집어쓰게 되었고 소량의 냉각제를 마시게 되었다.

1991년, 37세의 Joiner는 폐암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의 가족 중에 폐암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고 그가 담배를 피운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폐암을 앓게 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1993년 Joiner는 더욱 심한 폐암을 앓게 되었고 그는 PCBs에 노출된 것이 자신의 폐암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Joiner는 General Electric Com.와 Westinghouse Electric Co.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Joiner는 전문가에게 PCBs와 변압기 냉각제에 포함된 푸린(furans)과 다이옥신(dioxins)이 폐암을 확대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의뢰했고 전문가 증언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PCBs가 Joiner의 폐암을 증대시켰다는 과학적 증

거가 인정되지 않고, Joiner가 PCBs, 푸린, 다이옥신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Joiner 소송과 전문가 증언;

Daubert 소송이 전문가 증언의 방법론적인 규정을 정립시켰다면, Joiner 소송(General Electric Co. v. Joiner, 522 U.S. 136, 1997)은 전문가 증언의 입증 과정과 결과의 논리적 연계성(logical connection)에 대한 규정을 정립시켰다. 즉, Joiner 소송에서 원고측 전문가는 PCBs와 폐암과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원고측 전문가는 Joiner가 소량의 PCBs 삼켰다는 사실을 보여줬을 뿐 PCBs와 Joiner의 폐암 악화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하였다.

3.3 Kumho Tire 소송 사례

▪ 소송 개요;

1993년 7월, Patrick Carmichael이 미니밴을 운전하는 도중 뒷 바퀴의 오른쪽 타이어가 파열되어 차량이 전복되었고 그 결과,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심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1993년 10월, Carmichael은 타이어 공급자인 금호 타이어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Carmichael은 1심에서 타이어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타이어 결함 전문가인 Dennis Carlson, J.에게 타이어의 결함에 대한 입증을 의뢰하였다. Carlson은 타이어의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측감이나 시각적 방법으로 타이어를 검사하였다. Carlson은 Carmichael의 자동차에 장착된 해당 타이어가 1988년 제조되었고 1993년 3월까지 7,000 마일밖에 달리지 않았는데, 타이어의 두께가 고르지 않다는 것은 타이어의 결함이라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타이어가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에 맞지 않게 설계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설계결함이 사고의 원인임을 밝혔다. Carlson의 전문가 증언은 법정에서 채택되었고 타이어의 결함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금호 타이어사는 항소 과정에서 Dennis Carlson은 증거에 관한 연방법 702조(Federal Rules of Evidences 702)에 의한 전문가의 자격 조건에 합당하지 않으며, Carlson의 입증 방법이 Daubert 원리에 부합되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며 Carlson이 주장한 타이어의 설계 결함 부분에 대해 과학적인 반론을 제기하였다. 결국, 1999년 3월 23일 연방 대법원은 Carlson이 Daubert의 신뢰성 요소(test, error rate, acceptability and peer review)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Carlson의 증언을 기각하였다.

▪ Kumho Tire 소송과 전문가 증언;

금호타이어 소송은 우리나라 제조업체와 미국의 소비자 사이의 소송이었다는 점과 전문가 증언에 대해 Daubert 원리를 적용한 최근의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소송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요구하는 Daubert 원칙을 따르지 않으면 전문가 증언으로서 인정

될 수 없다는 판례이다.

4. 소송사례를 통해 바라본 전문가 증언

4.1 입증 책임으로서의 전문가 증언

전술한 바와 같이 전문가 증언은 제조물 결함의 입증 및 제조물 결함과 피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전문가의 증언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왜냐하면 전문가 증언에 대한 규제가 까다롭고 입증이 난해한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전문가들이 전문가 증언에 대한 적법한 절차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결함의 입증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은 주로 형사 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에 부합되는 물적 증거(physical evidence)를 확보한 경우에 수월해 진다. 여기서 물적 증거란,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규정, 그리고 표준에 부합되거나 부합되지 않았다는 증거나 관련 문서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는 문구 등의 직·간접적인 증거를 말한다.

그러나 미묘하게 물적 증거나 정황증거(circumstance evidence)만으로 결함의 입증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위임하게 된다. 전문가는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기 위해 조사, 실험, 검증, 검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들 일련의 과정이 Daubert 원칙하에 수행될 때 법정에서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다.

4.2 향후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의 중요성

미국은 제조물책임소송의 폭발적 급증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인식하고 제3차 불법행위법 법률개정(restatement)의 공표와 더불어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부분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과실책임주의가 제조물책임법에 도입된다면 소송 당사자의 입증 책임은 어려워진다. 또한, 미국에서는 제조물책임소송을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제조물 결함의 입증이나 인과관계의 입증이 앞으로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물적 증거를 통한 입증이 아니라, 결합 및 인과관계의 해석이 난해한 경우 전문가 증언은 법정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입증 책임은 변호사(lawyer)가 아닌 전문가(expert)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전문가 증언이 법정에서 가장 유효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조물책임소송이 활발한 미국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연방법원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J. Brook Lathram, 1999).

“The Court spoke in terms familiar to scientists, but unfamiliar to lawyers.”

이 말은 미국 법정에서는 과학적 언어가 쉽고 이해하기 쉬우

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과학적 언어가 아니면 설득력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5.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에 대한 준비

5.1 전문가의 자격

전문가(expert)는 특정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을 받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다. 전문가 증언(expert testimony)을 통해 결함의 입증이나 결함과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ExpertPages.com, 2001).

- 친화력(compatibility) : 변호사가 주로 소송에 필요한 전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변호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며, 잘 융화되지 못하면 팀워크를 발휘할 수 없다.
- 발표력(presentation skills) : 전문가 증언을 해야 할 경우 재판관을 설득할 수 없다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소용없다. 사안에 대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교육 및 훈련 정도(education, degrees and training) : 해당 분야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교육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한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 정도나 훈련 정도가 아니라면 법정에서 신뢰성을 얻을 수 없다.
- 전문지식(specific knowledge)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것은 변호사에게 적시에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 실무경력(practical experience) : 실무분야에서 적어도 수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지도 및 교육 능력(publications and teaching) : 상황에 따라 다수를 대상으로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자격증(licensing and certification) : 분야에 정통한 자격증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자격증이 있어야 공신력이 있다.
- 입상경력(honors) : 노벨상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입상 경력이 없다면 전문가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 전문가 증언이나 컨설턴트로서의 경력(history as an expert witness or consultant to lawyers) : 전문가 증언 경험이나 컨설턴트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의지(willingness to serve as an expert) : 전문가 증언시 자부심과 의지가 없다면 판사나 배심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다.

5.2 전문가의 책임

전문가는 크게 두 가지 책임을 지게 된다. 첫째, 컨설턴트로

서 변호사를 도와야 하며, 둘째,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을 해야 한다. 기타로, 때로는 변호사심문(deposition)이나 사전 법정(pre-trial states)에서 선서문 작성이나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도 한다. 전문가의 책임을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Expert Pages.com, 2001).

- **변호사 교육(educate counsel)**: 변호사는 법적 전문가이지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는 변호사에게 소송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해야하며,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전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조물책임소송에서는 특정 제조물의 기능이나 프로세스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며, 지엽적으로만 쓰이는 전문용어 등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교육은 필수적이다.
- **사안 평가(evaluate case)**: 전문가는 변호사가 맡고 있는 사안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같이 해야 한다. 자동차에 대한 제조물책임소송인 경우, 사고의 유형 분석 및 운전자의 부주의 정도와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변호사와 같이 해야 한다.
- **시험(test)**: 잠재된 증거나 물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 전문가의 시험 검사를 통해 실증적인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실험(experiment)**: 실증적 검증이 어려운 경우,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 제시를 위한 실험을 구상하고 실시하여 실험 결과로써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소송 진행 보조(assist in case development)**: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증거를 확보하거나 또 다른 증거를 찾는 것을 도와야 한다.
- **다른 전문가 증언 정보 획득(obtain other expert witnesses)**: 상대측 변호인의 전문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재판 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
- **공식 문서의 작성(provide written statements)**: 협상에 쓰일 공식 보고서나 문서를 만들어야 하며, 선언서나 기타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전문적인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 **설득력 있는 증거의 준비(prepare demonstrative evidence)**: 적시에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 **법정 증언 및 변호사심문(testify at a deposition and trial)**: 적절한 시기에 재판관이나 상대 변호사를 설득할 수 있는 증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

6. 성공적인 전문가 증언을 위한 지침

미국의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일관성이 부족한데, 이는 전문가 증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 전문가

증언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지 않다. 원인은 소송 당사자, 변호인 그리고 고용된 전문가들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전문가 증언이 판사나 배심원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송 전, 중, 후로 나누어 전문가 증언이 갖추어야 하는 일반적인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성공적인 전문가 증언을 위한 지침은 국제적 소송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물책임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6.1 소송 전 전문가 증언에 대한 지침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 증언을 위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전문가를 자체적으로(own expert) 두어야 한다: 변호사와 충분한 팀워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논리적 반론을 준비해야 한다. 이때 외부 전문가는 상대측 변호사에게 전문가 증언에 관한 정보를 누출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Bowman v. International Petroleum Corp., 1995 Westlaw 461213).
- 전문가 증언은 입증된 사실(empirical testability)에 근거하여야 한다: 입증방법이 이미 경험적으로 밝혀진 이론에 근거해야 한다.
- 전문가의 입증 방법은 적절하고 공인된 절차(peer review)를 따라야 한다: 입증 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 자신만의 주관적인 방법이나 절차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점검해야 한다.
- 입증 결과는 검증된 오차(known or potential rate of error)를 보여야 한다: 입증 방법을 선택할 때,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심어 줄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 전문가 증언의 논리는 현존하는 표준(standards)에 부합되어야 한다: 현존하는 표준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더욱 성공적인 증언이 될 수 있다(Philip J. Nordstrom v. White Metal Rolling & Stamping Corp., 1968).
- 해당 학계나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general acceptance)하는 입증 방법이어야 한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입증 방법에 대한 일반적 수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6.2 소송 중 전문가 증언에 대한 지침

법정에서 효과적인 전문가 증언을 통해 자신의 전문가 증언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이다. 판사와 배심원에게 증언의 신뢰성을 심어주고 적시에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가급적 빠르고 자주 할수록 유리하다: 관련 규정이나 법규에 근거한 전문가 증언이나 상대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 빈론은 즉각적이고 시기 적절하게 자주 해야 한다.
- 상대의 전문가 증언에 대한 미온적 판결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상대측 전문가 증언을 인정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없으나 이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방관한다면, 패소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 재판에서 자신의 전문가 증언이 채택되어야 하는 목적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채택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적 대응이 필요하다(*Albani v. Southern Arizona Services, P.C.*, 1997 Westlaw 718499).
 - 과학적인 전문가 증언임을 강조해야 한다: 과학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입증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해야 한다(*Lithuanian Commerce Corp. v. Sara Lee Hosiery, supra*, 179 F.R.D. at 462).
 - 포스터나 비디오 테이프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 증언은 법정에서 구두로 행해지므로 의사전달의 효과가 큰 시청각 보조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증언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명에 필요한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좋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을 설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 전문가의 자세나 말투에 신경 써야 한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한 방법이다. 11자 모양으로 똑바로 서고 손가락을 빈듯이 펴서 선서해야 한다. 재판관이나 배심원이 충분히 알아듣기 쉽도록 또박또박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하며, 재판관의 구두 지시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야 한다(Sam Brown, 1991).

6.3 소송 후 전문가 증언에 대한 지침

성공적인 전문가증언은 재판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마무리된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문가 증언에 대한 자료를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상대측 전문가 증언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자신의 증언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 재판이 종료된 후에도 전문가 증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United States v. 14.38 Acres of Land, 80 F.3d 1074, 5th Cir., 1996*).

7. 결 론

전문가 증언은 제조물의 결합 입증이나 결합과 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난해하고 복잡하며 전문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전문가 증언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제조물책임소송은 드문 편이며, 관련 법 조항

또한 강제적이지 않다. 이처럼 전문가 증언이 법정에서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Daubert 소송이나 Joiner 소송에 의해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련의 규정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증언의 내용이 전문가의 주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결합입증이나 전문가 증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입증 책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전문가 증언의 채택 여부는 미국의 판례를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문가 증언이 법정에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전문가의 법제화된 자격 조건과 입증 방법의 규정 및 전문가 증언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공인된 전문가들도 Daubert 원칙과 같은 과학적 입증 방법에 따라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에 발생하는 제조물책임소송에 대비하여 소송 국가 간의 제조물책임법리와 입증 책임 간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전문가에 대한 국제적 공인 규정과 이에 따른 전문가 증언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전문가 증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각종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전문가 증언을 활용할 경우, 소송 진행과정에서 객관성 문제로 인한 많은 논란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문가 증언에 의한 승소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ALI (1997),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 Product Liability*,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BNA (2001), Expert Evidence Report, 2(01), ISSN 1536-190X.
- BNA (2001), *Product Safety & Liability Reporter, Inc.*, 29(42), ISSN 1522-5259.
- Byun, S. N. and Lee, D. H. (1996), Product Liability and Safety policies for preparation of entry to OECD, *Autumn Conference of Ergonomics Society of Korea*, Session V., 141-151.
- Byun, S. N. and Lee, D. H. (1997),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with a implementation of ISO 9000 Series, *Spring Conference of Korea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Session III, 185-195.
- Byun, S. N. and Lee, D. H. (2000), Product Liability and a Product Safety Polic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26(3).
- Byun, S. N. and Lee, D. H. (1998), Implementation of Quality Management Policy and ISO 9000 Series under Product Liability Law,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26(1).
- Donald, J. Hirsch (1999), Challenging Unreliable Technical Experts After Kumho, *For The defense*, DRI.
- Donald, R. R. Frederico, Robert A. Weiner (2000), Owning Daubert-Challenging Expert Testimony as a Defense Strategy, *For The Defense*, November 2000, 12-48.
- James, C. Ughetta, James P. Donovan (1999), Deposing Plaintiff's Expert, *For The Defense*, July 1999, 18-22.
- J. Brook Lathram (1999), Assessing the Reliability of Expert Testimony, *For The defense*, July 1999, 12-51.
- Lee, D. H. and Byun, S. N. (2000), A Systematic Approach to Accident Scenario Analysis of Child Nursery Equipment: Stroller Case Study, *Proceedings of*

-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 44th Annual Meeting, San Diego, CA, USA.*
- Lee, D. H and Byun, S. N. (1998), A Systematic Approach to Accident Scenario Analysis for Safer Products: Quality Function Deployment Technique, *Proceedings of the 6th Asia Pacific Quality Organization*, Korea Standards Association, Seoul, Korea.
- Lee, D. H. (2001), Development of a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Korea Standards Association*.
- Lee, J. W. and Kim, J. S. (1994), Legislation of a Product Liability Law,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Lim, S. H. (2000),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Product Defects, Doctoral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 Mark E. Gebauer (2001), The "What" and the "How" of Challenges to Expert Testimony under Rule 702, *For The Defense, July 2001*, 12-17.
- Randall L. Goodden (2000),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A strategic Guide, *ASQ Quality Press Milwaukee, Wisconsin*.
- Sam Brown (1991), The Product Liability Handbook, *Van Nostrand Reinhold*, 447-479.
- Walter J. Andrews (1999), Is Daubert Limited to Scientific Testimony?, *For The Defense, February 1999*, 4-8.
- William R. Sampson (1999), Daubert Challenges to Economic Experts, *For The Defense, March 1999*, 30-36.
- Woo, S. B. (2001), A Study on the American Products Liability Law,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 University*.

김사길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현재: 경희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 제조
 물책임공학센터 연구원
 관심분야: 제품안전

변승남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
 The University of Michigan 산업공학 박사
 현재: 경희대학교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정
 교수
 관심분야: 제조물책임, 원자력 인간공학, 인간
 컴퓨터 인터페이스